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59	26	1995.12. 7.	총재 이경식

의안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중 금융기관의 편중여신관리 관련조항이 기존의 은행감독규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하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 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개정(안)

원	개	정 (안)	비 고
<p>제1장 총 칙</p>	<p>(삭) 제</p>	<p>장 구분 폐지</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3조, 제72조, 제73조 및 제116조의2와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 운용 및 투자지침과 여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3조, 제72조, 제73조 및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3조, 제72조, 제73조 및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 관련조항이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른 근거규정 삭제 및 조문정비</p>
<p>제2장 금융기관의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p>	<p>(삭) 제</p>	<p>장 구분 폐지</p>	
<p>제2조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 (원행과 같음)</p>	<p>제2조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 (원행과 같음)</p>	
<p>1. 원칙적으로 자체소급책임범위내에서 자금운용</p>	<p>1. (원행과 같음)</p>	<p>1. (원행과 같음)</p>	
<p>2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여신의 지역별 및 부문별 균점 배분</p>	<p>2. (원행과 같음)</p>	<p>2. (원행과 같음)</p>	
<p>3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등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여신의 억제 및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지원</p>	<p>3. (원행과 같음)</p>	<p>3. (원행과 같음)</p>	
<p>4 차주의 소요자금규모와 종합적인 신용의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및 여신취급후 용도의 유용여부의 차주의 신용 상태 변경상황 등의 파악을 통한 여신의 효율성과 건전성 유지</p>	<p>4. (원행과 같음)</p>	<p>4. (원행과 같음)</p>	
<p>5 비업무용 부동산의 담보취득에 따른 기업의 부동산취득조장의 방지 및 동업자 상호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제 등의 활용을 통한 신용에 의한 여신취급의 확대</p>	<p>5. (원행과 같음)</p>	<p>5. (원행과 같음)</p>	
<p>6 금융기관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과 직접금융의 유도를 통한 과다여신의 억제</p>	<p>6. 금융기관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과 직접금융의 유도를 통한 과다여신의 억제</p>	<p>6. 금융기관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과 직접금융의 유도를 통한 과다여신의 억제</p>	<p>○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 관련조항이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정비</p>

원	행	개	정 (안)	비	고
7.	여성임무와 관련된 에·채급 등의 가임강요 지양을 통한 금융 거래절서의 간전화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 특히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급 대출 증가에의 45%이상, 지방은행은 70%이상,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35%이상(「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현행과 같음)		
9.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 투자, 지급보증 및 인수임무의 취급기준과 송도별 한도의 준수		(현행과 같음)		
제3조 (여신의 금지)	(생 락)		제3조 (여신의 금지)		
제3조의2 (담보취득의 제한)	(생 락)		제4조 (담보취득의 제한)		○조 철폐
제4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생 락)		제5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조 철폐
제3장 금융기관의 편중여신 관리					
제5조 (편중여신 억제)			(삭 제)		○장 구분 폐지
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이하 "30대 계열기업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와 은행별 제3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거래여신"을 수혜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신 취급을 대규모 억제하고 그의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이관
②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하 "은행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30대 계열기업군을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중소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 선정되는 30대 계열기업군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개시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 절차 진행중인 기업체					
2. 금융기관의 불건전신신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체와 임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받아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기업체					

3.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채주기업체와 특정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파견하여 자금관리, 담보관리 등 부분적인 관리 또는 기업경영에 일부 참여하는 기업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열기업군의 결정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대출금의 범위는 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조.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① 은행감독원장은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 점유율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대출금이 동일 계열기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계열기업군의 범위와 주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거액여신 총액한도)

①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거액여신"의 총액제한(이하 "거액여신 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부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여신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호의 부류를 말한다. 다만, 임차보증 및 「은행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1. 대출금
2. 의행대출금
3. 내국수입유선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지급보증

(삭 제) ○ 「금융기관 감독규정」
으로 이관

(삭 제) ○ 「금융기관 감독규정」
으로 이관

4. 금융기관은 거래여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여신 취급 현황을 은행감독원장과 보고하여야 한다.

6. 은행감독원은 거래여신종액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여신거래은행)

1. 여신거래은행은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주된 거래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한다)을 정한다.

2. 주거래은행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현지금융을 포함한 전체 여신살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여신거래은행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지역여신을 취급할 경우에는 기표적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움직일 할으로써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30대 계열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은 30대 계열기업군, 주기업체의 주거래은행으로 한다.

5. 제5조 제2항 및 이 조 제4항의 "주기업체"는 자산규모, 계열기업군 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은행감독장이 결정한다.

제8조 (기업재무구조 개선)

1. 은행감독원은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업무종별 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하여 여신거래은행의 기업재무구조 개선지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 「금융기관 감독규정」
으로 이관

(삭 제)
○ 「금융기관 감독규정」
으로 이관

현 행

② 추가대출은 30대 재일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친반적인 차입금 상환 등을 감안하여 은행감독원장이 결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0대 재일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함으로써 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 1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지표로 하는 자기자본의 충실화 유도
2. 무분별한 기업신설, 매입, 출자 등 기업투자자의 억제 및 주력 업종이 아닌 기업의 정리 유도
3. 부동신위탁의 억제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유도
4. 무리한 차관도입의 억제
5. 업체별 친밀시역에 의한 건권결정 유도
6. 기업투자 및 부동신위탁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자체조달 유도
7. 기타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지도

③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되거나 차입금이 현저히 증가한 30대 재일기업군에 대하여는 역신을 억제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감독원장은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추가대출은 제2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역신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과 원화지급보증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체대출 취급이율과 지급보증료 최고율의 1.5배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대출은 액이 여신중단조치를 위한 경우 예는 그 기업체의 기타 여신거래은행도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 (안)	비고
<p>제9조 (규정적용 일부배제) 은행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삭 제)</p>	<p>○ 「금융기관 감독규정」 으로 이관</p>
<p>1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보험법」에 의한 보험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시설투자산업유형법」에 의한 시설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p> <p>2 제원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기업체로서 은행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분산우량기업체로 선정된 기업체</p> <p>3 기업체의 특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업체</p>	<p>(삭 제)</p>	<p>○ 「금융기관 감독규정」 으로 이관</p>
<p>제10조의 2 (금융통합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은행감독원장은 제3장의 금융기관의 편중여신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금융통합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 장 구분 폐지</p>
<p>제4장 본 칙</p>	<p>(삭 제)</p>	<p>○ 조 폐상 ○ 항 삭제</p>
<p>제6조 (제제) 1 한국은행총재는 이 규정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지시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대출을 제한 또는 거절하거나 여신에 대하여 한국은행 최고여신인원 범위내에서 별첨관리물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기업체의 이름 등에 대한 처적성을 제한할 수 있다</p>	<p>(삭 제)</p>	<p>○ 조 폐상 ○ 항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은행감독인장은 제3장의 규정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정 또는 지시등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3장의 규정과 이의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제)	○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 관련 제재규정 삭제	
제11조 (보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총재와 은행감독인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조 제상 및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 관련 보고규정 삭제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조 내지 제9조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은행감독인장이 결한다.	제8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 제상 및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 관련 위임규정 삭제	
(신 원)			부	○ 시행일자 명시	취
<별 표>	어신금지부문 (생 략)		이	이	어신금지부문 (원행과 같음)
<별 표>			이	이	
			이	이	